

부산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3532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래

피고B

변론 종결2024. 10. 16.

판결 선고2024. 11. 13.

주 문

-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2. 11. 1. 접수 제1333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2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C은 2022. 6. 9.경 사실은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들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해군에 'E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들에게 현금으로 접대비를 건네주었으니 20,000,0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F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고단3372 판결). 위 판결은 2024. 3. 21. 확정되었다.

나. C은 2022. 10. 28.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2. 11. 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G에 전무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한편 C은 2015. 7. 24.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C은 2024. 3. 4.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20,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원고는 2024. 3. 14.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금정세무서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I기관의 회신,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2. 6. 9. C에게 위와 같은 사기범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C이 형사공탁한 20,000,000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C에게 위 편취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6. 9.부터 공탁일인 2024. 3.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1,767,704원(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2024. 3.

5.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아울러 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피고도 C이 당시 주식회사 G에 전무로 재직하여 급여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상 그 사해의사도 추정되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이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인 원고는 해당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변동이 없으므로, 굳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들에게 제공할 뇌물 명목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국방과학연구소 담당자들에 대한 접대비조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자신의 해군 쪽 인맥 등을 과시하며 'E 프로젝트'를 수익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금을 출자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한 후 원고에게 접대비를 요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어서 범행 수법이 대단히 치밀하고 불량한데다가,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이 실제로 뇌물이나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C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익자인 C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원고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원고의 불법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C과 결혼할 당시 친정에서 받은 돈과 피고가 미술학원을 운영한 수익으로 2015년경 구입한 것이나, 당시 피고의 상속세 문제 등으로 피고의 명의가 아닌 C의 명의로 해두었다가, 나중에 2021년경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재개발이 추진되어 동의서 제출 등을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의 명의로 회복시킨 것이며, 원고가 피고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3. 6.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두고 피고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2023. 9. 12.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에게 혐의 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경위나 자금 출처 및 명의신탁 약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남편인 C으로부터 생활비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C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유신

별지